

#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 입안계획서

## 1. 행정규칙명

□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고시 제2022-45호, '22.9.6.)

## 2. 개정 사유

□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「면세산업 활성화 대책」(9.14) 과제\* 추진에 따른 개정

\* ① 국민편의 제고, ② 경영 안정화 지원, ③ 규제혁신 등 3개 분야 15대 과제

○ 총 15개 과제 중 5개 과제 관련 규정 개정

<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 대상 과제(5개)>

① 국민편의 제고	④ 면세품 구매·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- ①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
②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	① 오픈마켓·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- 오픈마켓·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및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
③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	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-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前 「예비특허」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영업개시 준비기간 단축 지원
	② 「선판매 후반입 제도」 전면 확대 -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
	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-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시내면세점 재반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류창고에 직반입 허용

□ 면세품 판매·반출입 자료의 전자매체 보관 허용, 입국장 면세점 운영인의 구매자 구매총액 확인, 기타 용어 수정 및 조문 정비 사항 반영

### 3. 주요 개정내용

- 면세품 구매시 신원확인 방식 확대 [추진과제 ①-④]
  -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 구매자의 여권 등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
    - 디지털 신원인증 등 세관장이 인정한 신원확인 방법도 구매자 신원확인 방법에 포함(제3조제12항)
  
- 「선판매 후반입 제도」 시행 [추진과제 ③-②]
  -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(※기존: 반입된 물품만 판매 가능)(제6조제1항)
  
- 면세점 예비특허제도(영업개시일전 반입허용) 도입 [추진과제 ③-①]
  - 신규 면세점의 영업개시일 전이라도 감시단속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물품 반입을 허용(제6조제9항)
  
- 면세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[추진과제 ②-①]
  - ①오픈마켓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(제11조제2항 및 제3항), ②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(제11조제7항)
  
-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[추진과제 ③-⑥]
  -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을 시내면세점 창고 뿐만 아니라 통합물류창고에도 직반입 허용(제19조제4항)  
(※기존: 최초 판매된 시내면세점으로 우선 반입 후 이고 가능)
  
- 면세품 판매·반출입 자료의 전자매체 보관 허용
  - 보세운송,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의 자료보관매체(마이크로 필름·광디스크·기타전산매체) 보관 허용(제30조제2항)

□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구매자 구매총액 확인

- 구매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만 구매자의 구매총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 명확화(제5조제6항)

□ 기타 용어 정의 명확화 등 조문 정비

- ‘사이버몰’ 정의 규정 신설 등(제2조제16호)

**4. 신규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**

**5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**

**6. 시행일자(예정) : '23. 1월.**

- 다만,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

**7. 의견제출 방법**

- 제 출 처 :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
- 담 당 자 : 조현상 사무관(☎ 042-481-7637)  
박기현 주무관(☎ 042-481-7853)
- 제출방법 : E-mail([parkgoldencustoms@korea.kr](mailto:parkgoldencustoms@korea.kr)),  
FAX(042-481-7749)